영란은행(PRA),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 방안 발표

□ **영란은행(PRA)은** 3.31일, SVB UK 사태(2023.3월)의 교훈을 바탕으로 **예금자보호한도**(deposit protection limit)**를 현행** 8만5천 파운드에서 **11만 파운드로 상향조정**하는 방안*을 발표

* Consultant Paper 4/25 – Depositor Protection (Bank of England, 2025.3.31.)

1 배 경

□ '23.3월 **SVB UK 사태 직후** 소형은행의 뱅크런 우려 등 **영국의 금융시스템에 적지 않은 혼란**이 있었으며, 영국 금융당국은 이를 ① **예금인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**, ② **예금자보호한도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**으로 진단

o **(예금 인출의 신속성 제고)** 우선 영국 정부는 '24.1월 **특별정리제도(SRR) 개선방안* 발표**를 통해 **부실 소형은행에 신속한 자본확충이 가능**하도록 함으로써 **예금자 인출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**할 수 있는 유동성 체계를 마련**

*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작성한 현지정보("**영국 정부, SVB UK 사태 관련 특별정리제도 개선방안 발표**", 2024.1.24.) 참조

** 영국 정부는 24.1월 발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4.7월 은행정리법안(Bank Resolution Bill)을 마련하였으며 25.4월 현재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 심의중

o **(예금자보호한도 상향)** 영란은행이 발표한 금번 **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 방안은** 충분한 예금자보호 조치를 통해 **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**하기 위한 목적

2 주요 내용

□ **2025.12.1.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** 기존의 8만5천 파운드*에서 **11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**

* 브렉시트 이전인 2017년 설정된 한도로 당시는 EU의 예금보호지침(DGSD; 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)상 한도인 100,000만 유로의 파운드 환산금액을 적용

작성자 : 김낙현 차장

o 아울러 2025.12.1.일부터 **적격 일시 고액계좌**(THB; Temporary High Balance)* **보호한도도** 100만 파운드에서 **140만 파운드로 상향조정**

* 주거용 부동산 매각, 상속, 보험금 지급 등 자금의 일시적 예치 등 이른바 인생 사건(life events)으로 인한 일시적 고액계좌는 예치시점부터 6개월간 보호("PRA policy statement 6/15", 2015.7월 시행)

□ 영란은행은 **예금자보호한도를 2만5천 파운드 늘린 근거**로 '17~24년 중 **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**한 점,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에 의해 **완전히 보호를 받는 예금자의 비율 감소**를 언급

o 2017.1월의 85,000 파운드는 소비자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2024.12월 현재 113,669 파운드로 증가

o 예금자보호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는 예금자의 비율은 2018년 98%에서 2024년 97%로 하락하였으며, 한도를 11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할 경우 99%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

o 또한 금번 한도 조정시 미국(25만 달러)에 비해서는 낮으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한도(10만 유로)를 상회함에 따라 영국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

3 향후 일정 및 주요 반응

□ **영란은행은 금년 6월말까지** 금융기관 등 **각계의 의견을 수렴**하고, **재무부의 승인**을 거쳐 **11월에 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관련 정책성명서**(policy statement)를 **발표**할 방침

□ 영국의 금융기관 및 시장관계자들은 대체로 **금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영국 금융시스템 신뢰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**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*

* 영국의 은행업계(UK Finance)는 현재 한도가 2017년 설정된 만큼 현실화하는 바람직하며 금번 상향조정이 금융시스템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(underpin confidence in the UK's financial system)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, 소비자 이익단체(Which?)도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현명한 결정(sensible decision)으로 언급

o 한편 **은행업계는**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**예금보험기구에 대한 부과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에 미칠 악영향**에 대해 **우려**하는 모습*

* "Deposit takers will need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n FSCS levy contribution and the associacted balancesheet considerations"(FT, 2025.3.31.)